

법원 공보

2025. 01. 15.
제 1704 호



법원행정처

목차

• 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5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50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60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62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65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67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69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1
• 내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73
• 예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75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87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른 공직후보자 지원에 관한 예규	90
• 신법령 목록		91
• 인사		110

■ 규칙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0호 2024. 12. 31.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총 계	14,554
경력직 계	14,515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	1
법원행정처차장	1
사법연수원장	1
사법연수원부원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사법연수원 교수	50
일반직 계	14,460
법원관리관(1급)	1
법원이사관(2급)	21
이사관(2급)	1
법원부이사관(3급)	67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전산부이사관(3급)	1
기술부이사관(3급)	1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20
법원서기관(4급)	390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3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1
전산서기관(4급)	2
기술심리서기관(4급)	15
기술조사서기관(4급)	5
사서서기관(4급)	2
기술서기관(4급)	2

서기관(4급)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66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2
기술서기관(4급)·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
기술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1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관(5급)	8
법원사무관(5급)	1,105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34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3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4
전산사무관(5급)	13
통계사무관(5급)	1
경위사무관(5급)	7
기술심리사무관(5급)	2
기술조사사무관(5급)	10
사서사무관(5급)	6
통역사무관(5급)	1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5
기계사무관(5급) 또는 전기사무관(5급)	5
화학사무관(5급) 또는 보건사무관(5급)	1
법원주사(6급)	1,876
법원주사(6급) 또는 등기주사(6급)	120
조사주사(6급)	49
전산주사(6급)	56
통계주사(6급)	1
전산주사(6급) 또는 통계주사(6급)	1
경위주사(6급)	40
사서주사(6급)	26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7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13
보건주사(6급)	1
화학주사(6급)	2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9
관리주사(6급)	1
법원주사보(7급)	1,350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144
조사주사보(7급)	106
전산주사보(7급)	27
통계주사보(7급)	1
경위주사보(7급)	34
사서주사보(7급)	13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	1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1
보건주사보(7급)	4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6
관리주사보(7급)	2
보안주사보(7급)	1
보안관리주사보(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0
법원서기(8급)	2,700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69
전산서기(8급)	22
통계서기(8급)	4
경위서기(8급)	144
사서서기(8급)	14
건축서기(8급)	2
기계서기(8급)	6

전기서기(8급)	14
화학서기(8급)	1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47
관리서기(8급)	3
전기운영서기(8급)	4
환경서기(8급)	1
병기서기(8급)	1
보안서기(8급)	2
보안관리서기(8급)	12
보안관리서기(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77
법원서기보(9급)	1,548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
전산서기보(9급)	14
통계서기보(9급)	2
전산서기보(9급) 또는 통계서기보(9급)	1
경위서기보(9급)	7
사서서기보(9급)	8
건축서기보(9급)	5
기계서기보(9급)	49
전기서기보(9급)	15
보건서기보(9급)	2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219
관리서기보(9급)	357
기계운영서기보(9급)	10
전기운영서기보(9급)	2
환경서기보(9급)	51
조경서기보(9급)	6
보안서기보(9급)	95

보안관리서기보(9급)	137
보안관리서기보(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382
기록연구관	2
기록연구사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	8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1
특수경력직 계	39
정무직 계	3
대법원장 비서실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윤리감사관	1
별정직 계	36
비서관(2급상당)	1
비서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비서(7급상당)	14
비서(8급상당)	6
비서(9급상당)	10
사법연수생	2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1호 2024. 12. 31.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소송홈페이지”란”을 ““전자소송포털”이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 제43조제3항 중 “전자소송홈페이지”를 각각 “전자소송포털”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등”이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문자메시지는”을 “문자메시지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자메시지가”를 “문자메시지등이”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소송홈페이지”를 각각 “전자소송포털”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3154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3. · 4. (생략)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② ~ ④ (생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 2. “전자소송포털”이란 -----

-----.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등록) ① -----

----- 전자소송포털 -----

-----.

- 1.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전자소송포털 -----
-----.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

----- 전자소송포털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전자소송포털 -----

-----.

현 행

④(생 략)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 ⑥(생 략)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 ⑤(생 략)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다.

1. ~ 3.(생 략)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

②·③(생 략)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생 략)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개 정 안

④(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 전자소송포털-----

-----.

② ~ ⑥(현행과 같음)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

-----.

----- 전자소송포털-----

② ~ ⑤(현행과 같음)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

-----.

1. ~ 3.(현행과 같음)

4. ----- 전자소송포털-----

②·③(현행과 같음)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소송포털-----

-----.

현행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의4. (생략)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

②·③(생략)

제26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③ ~ ⑤(생략)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 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 ④(생략)
⑤ 삭제

개정안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

1. ~ 3의4. (현행과 같음)

4. ----- 전자소송포털-----

②·③(현행과 같음)

제26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① -----

-----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 등”이라 한다)-----, -----, 문자메시지등은-----.

② ----- 문자메시지등이-----.

③ ~ ⑤(현행과 같음)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

----- 전자소송포털-----

② ~ ④(현행과 같음)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2호 2024. 12. 31. 공포)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판서”를 “재판서·조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조서의 정보를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발급되는 재판서·조서의 정보·등본,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보·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1. ~ 3. (생략)
-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 정보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 설>

개 정 안

제4조(수수료) ① -----

----- . <단서 삭제>

- 1. ~ 3. (현행과 같음)
- 4. ----- 재판서·
조서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 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조서의 정보를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3호 2024. 12. 31. 공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등”을 “사건번호, 재판부번호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과코드, 재판부번호”를 “재판부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급명령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 또는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담임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수이송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이송 처리할 수 없는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재배당전 또는 이송 전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이를 환급하여 납부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제26조”를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7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법원코드	재판부번호

사 건 번 호					
진 행 번 호	출급금액	원천징수세금액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후 지 급 액
		소득세	주민세		
출 급 금 종 류					
출 급 청 구 일					
청 구 자	성 명			전 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 편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 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 편 번 호	
	주 소				
출 급 구 분	<input type="radio"/> 원금만 지급		<input type="radio"/> 원금 및 이자지급		
	<input type="radio"/>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input type="radio"/> 이자만지급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직위명 성 명 전자서명완료 또는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작성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 주민등록증, 인장
2.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3.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제7-2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법원코드	재판부번호

사 건 번 호							
법원보관금	진행번호	출급금액	원 천 징 수 세 금 액		부 가 가 치 세	세금공제후 지 급 액	
	종 류		소 득 세	주 민 세			
	납부자						
출 급 금 종 류							
환 급 사 유							
출 급 청 구 일							
청 구 자	성 명				전 화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우 편 번 호		
	주 소						
	납부자(배당권자)와 상 이 한 이 유						
대 리 인	성 명				전 화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우 편 번 호		
	주 소						
출 급 구 분	<input type="radio"/> 원금만 지급			<input type="radio"/> 원금 및 이자지급			
	<input type="radio"/>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input type="radio"/> 이자만지급			
입금은행·계좌번호·계좌명의							
비 고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직위명 성명 전자서명완료 또는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

법원코드	재판부번호

사 건 번 호					
진 행 번 호	출급금액	원천징수세금액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후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출 급 금 종 류					
출 급 청 구 일					
청 구 자	성 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출 급 구 분	<input type="radio"/> 원금만 지급		<input type="radio"/> 원금 및 이자지급		
	<input type="radio"/>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input type="radio"/> 이자만지급		
입 금 계 좌 번 호					
비 고					
위의 보관금(이자)을 은행 지점에서 출급(환급)할 것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세입세출의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명		인	
위와 같이 보관금(이자)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실명	인
대리인 성명	인			확인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제9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

법원명
재판부

단체출급번호
청 구 일 자

페이지

순번	사 건 번 호	진 행 번 호	출 급 금 종 류		출 급 구 분
	출 급 금 액	소 득 세	주 민 세	부가가치세	세금공제후 지급액
	입 금 은 행	입금계좌번호			
	청 구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합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 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u>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u>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 ----- <u>사건번호, 재판부번호</u> 등 ----- -----.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u>과코드, 재판부번호</u> 3. ~ 6. (생략) ④ ~ ⑤ (생략) <u>〈신설〉</u>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재판부번호</u>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급명령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u>
제22조(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① <u>사건의 재배당으로 사건담당과가 변경된 경우와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u> ② <u>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 사본 1부를 기록과 함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u>	제22조(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① <u>사건의 재배당 또는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담임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수이송 처리한다.</u> ② <u>제1항의 경우에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이송 처리할 수 없는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재배당 전 또는 이송전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이를 환급하여 납부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현 행

③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이송받을 법원의 취급점에 대해 법원보관금을 송금처리하도록 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당자는 법원 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취급점에 송부하여 사건번호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사범부전산망이 연결되지 아니한 법원 또는 시·군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해당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 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 등의 오류정정)

----- 제31조-----

-----.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4호 2024. 12. 31.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그로부터 해당 의견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
2. 서면·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의견 확인의 상대방·방법·연월일 및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피해자등이 의견제출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9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그로부터 해당 의견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

2.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 모사전송 ·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의견 확인의 상대방 · 방법 · 연월일 및 피해자들이 제출한 의견(피해자들이 의견제출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9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들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5호 2024. 12. 31. 공포)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입력하여”를 “입력하거나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 후”로 한다.

제3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각급기관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한정한다.

1. 법원사무관
2. 법원주사
3. 법원주사보
4. 조사관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등록 등) ①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제3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 등록한다.

④ 관인은 각급 법원에서 새겨 사용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제36조(특수관인) ① ~ ④ (생략)

〈신설〉

제38조(등록 등) ① 각급법원(지원을 제외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3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입력하거나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 후 -----.

제36조(특수관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급기관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한정한다.

1. 법원사무관
2. 법원주사
3. 법원주사보
4. 조사관

제38조(등록 등) ①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

②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은 그 소속 기관에 등록한다.

③ 관인은 각급기관에서 새겨 사용하되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

②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제 3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 등록한다.

④ 관인은 각급 법원에서 새겨 사용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6호 2024. 12. 31. 공포)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86조제1항 중 “수령을”을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기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개 정 안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 유기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삭 제〉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7호 2024. 12. 31.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개 정 안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5년 -----
----- . -----

-----.

⑤ (현행과 같음)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8호 2024. 12. 31. 공포)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근무성적 등 평정자

평정대상자	평정자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 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선임재판연구원,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사법정보화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소속 고등법원장
각급 법원 근무 판사(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제외)	소속 법원장 또는 소속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비서실 판사·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사법정보화실장 제외) 및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정대상이 되는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 근무 판사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연구위원 및 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	윤리감사관
재판연구원(선임재판연구원 제외)	수석재판연구원
소속 법원을 달리하는 겸임(직무대리 포함)판사 또는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89호 2025. 1. 3. 공포)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3006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법원규칙 제3006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 정 안

대법원규칙 제3006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내규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34호 2024. 12. 31.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문심리위원규칙」제2조의5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위촉·해촉 및 그 기준과 절차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 변호사 2명
3. 대학교수 1명

③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7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또는 필요한 지원활동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및 공무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규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5호 2025. 1. 2. 결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장의 제목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를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로 하고, 제20조의 제목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을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수동의서가”를 “제1항의 서면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중 “회수동의서”를 각각 “제1항의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6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 양식, 별지 제15호 양식, 별지 제16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 제20조 각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양식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별표 1]

양식 목록

양식 번호	명 칭	관련 공탁규칙 조문	비 고
1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제20조, 제82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2	형사공탁 공고	제84조	제8조
3	형사공탁 정정공고	제84조	제8조제3항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제85조제1항	제9조제1항
5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제85조제1항	제9조제2항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형사공탁)	제23조제1항	
7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	제85조제2항	제9조제4항
8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1)	제85조제2항	제9조제4항
9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재판양식 B4971)	제86조제5항	제13조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재판양식 B4972)	제86조제1항	제11조
11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 (재판양식 B4973)	제86조제2항	제12조제1항
1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전화 등)요청 접수처리 (재판양식 B4974)	제86조제5항	제13조
13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49조의2	제20조
14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49조의2	제20조
15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		제9조의2
16	의견제출 고지·통지 보고서		제9조의2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번호		년금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은행 지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전화번호		성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길 ○,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법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 공탁물 출급·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검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부).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법원 공탁계)]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함)'에 하고, 공탁금 출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금함)'에 하고 출금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피공탁자의 동의서가 공탁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양식]

공탁물 회수동의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형사본안사건		법원명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 (공탁자)
피공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부서류 ¹⁾					
<p>위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피공탁자 성명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휴대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p>					

1)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공탁물 회수동의서에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양식]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형사본안사건		법원명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 (공탁자)
피공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부서류 ²⁾					
<p>피공탁자는 공탁자가 제공한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거절의사를 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피공탁자 성명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휴대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p>					

2)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에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양식] 전산양식 B2128

○○ 법 원 의견 조 회 서

사 건 20 고단
피 고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금전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합니다)의 의견을 확인하여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판 사 ○○○ 인

의견 회 신 서

○○법원 ○○재판부 귀하

다음과 같이 피해자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공탁금 수령(예정)
- 공탁금 수령 거부(예정)
 - 이미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물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완료
- 기타[미정, 의견제출 거부 등]
- 첨부문서와 같음

20 . . .

검찰청 검사 ○○○ (또는 피해자 변호사 ○○○)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

제20조(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생 략)

③ 우편으로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1.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 2.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신 설〉

개 정 안

제9조의2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

제20조(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①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②(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의 서면이 -----
-----.

1. 제1항의 서면-----

2. 제1항의 서면-----

④ 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6호 2025. 1. 2.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호 양식, 제8-1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호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양식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주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은행지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년제 지청 지원	호 년 형제 년 고단(합) 제	호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 3.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고	
	한글		(은행)	(은행)		
	숫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관은행		은행		법원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 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금청구시			회수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금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함, 아래 ※5. 참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금함, 아래 ※6. 참조)			<input type="checkbox"/>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input type="checkbox"/>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input type="checkbox"/>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해제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 (첨부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담보권 실행 <input type="checkbox"/> 배당에 의함 <input type="checkbox"/> 채권양수에 의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탁동지서 <input type="checkbox"/> 공탁서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위임장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초본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input type="checkbox"/> 동의서·승낙서·보증서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원인서면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착오증명서면 <input type="checkbox"/>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input type="checkbox"/>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포괄계좌입금(금융기관 : 계좌번호 :) <input type="checkbox"/>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년 월 일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인)		
법원		지원		공탁관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금·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년 월 일		(성명 또는 날인)		

-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금·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함)'에 ☑하고, 공탁금 출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금함)'에 ☑하고 출금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른 공직후보자 지원에 관한 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7호 2025. 1. 6. 결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사청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공직후보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사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할 때까지 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량 및 운전원
2. 사무실
3. 비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법령 목록 (2024. 12. 16. ~ 2024. 12. 31.)

법률

법률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0899 (별권2)	2024. 12. 20.	3
법률제20562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
법률제2056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20564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056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	"	8
법률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056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0569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0570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0571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20572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	23
법률제20573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 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205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057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057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899 (별권2)	2024. 12. 20.	33
법률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0578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057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058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42
법률제20582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45
법률제205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1
법률제2058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20586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205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0588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0589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059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20591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2059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2059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899 (별권2)	2024. 12. 20.	70
법률제2059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71
법률제20596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20597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20598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6
법률제20599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20602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20603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5
법률제20604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206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20905	2024. 12. 31.	4
법률제2060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060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061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18
법률제206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06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2061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20905	2024. 12. 31.	32
법률제2061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061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061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20619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	"	"	85
법률제20620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2062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2062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2062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2062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0625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20626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	"	96
법률제2062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101
법률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20905 (별권10)	"	2
법률제206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
법률제206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2063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06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3

조약

조약제2593호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20898	2024. 12. 19.	4
조약제2594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	"	57
조약제2596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20902	2024. 12. 26.	4
조약제2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_국문	20902 (별권1)	"	2
조약제2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_국문_양허표	20902 (별권2)	"	2
조약제2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_영문	20902 (별권3)	"	2
조약제2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_영문_양허표	20902 (별권4)	"	2
조약제2597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20903	2024. 12. 2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06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96 (별권1)	2024. 12. 17.	2
대통령령제3506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506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5069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20896 (별권1)	2024. 12. 17.	9
대통령령제3507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5071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507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507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507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50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50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507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507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507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5080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3508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508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50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508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50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96 (별권1)	2024. 12. 17.	68
대통령령제3508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5087호	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901	2024. 12. 24.	5
대통령령제3508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12
대통령령제35090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5091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5092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5093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509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50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5096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3509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51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5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51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51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01	2024. 12. 24.	82
대통령령제3510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35105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6
대통령령제35106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35107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35108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35109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35110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35111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511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511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03	2024.12. 27.	16
대통령령제3511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904	2024. 12. 30.	5
대통령령제3511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51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51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5118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511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14)	20904 (별권2)	2024. 12. 30.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14)	20904 (별권3)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3/14)	20904 (별권4)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4/14)	20904 (별권5)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5/14)	20904 (별권6)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6/14)	20904 (별권7)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7/14)	20904 (별권8)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8/14)	20904 (별권9)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9/14)	20904 (별권10)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0/14)	20904 (별권11)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1/14)	20904 (별권12)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2/14)	20904 (별권13)	"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3/14)	20904 (별권14)	2024. 12. 30.	2
대통령령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4/14)	20904 (별권15)	"	2
대통령령제351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05	2024. 12. 31.	105
대통령령제3512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512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5
대통령령제35124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35125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78
대통령령제3512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1
대통령령제3513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2
대통령령제3513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	193
대통령령제3513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4
대통령령제3513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5
대통령령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6
대통령령제35135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1
대통령령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2
대통령령제3513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8
대통령령제351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9
대통령령제3513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15

대통령령제3514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905	2024. 12. 31.	219
대통령령제3514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22
대통령령제3514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27
대통령령제3514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29
대통령령제3514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32
대통령령제3514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35
대통령령제3514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38
대통령령제35147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1
대통령령제3514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5
대통령령제3514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8
대통령령제35150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50
대통령령제3515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1
대통령령제35152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5
대통령령제35153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66
대통령령제35154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	278
대통령령제35155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7
대통령령제3515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2

대통령령제35157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905	2024. 12. 31.	294
대통령령제351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6
대통령령제351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8
대통령령제351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0
대통령령제3516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1
대통령령제3516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2
대통령령제3516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3
대통령령제3516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5
대통령령제3516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6
대통령령제35166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8
대통령령제35167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	"	310
대통령령제3516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2
대통령령제35169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42
대통령령제35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1
대통령령제35171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353
대통령령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	354
대통령령제3517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7
대통령령제3517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9
대통령령제35126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20905 (별권1)	"	2

대통령령제35127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20905 (별권2)	2024. 12. 31.	2
대통령령제35128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905 (별권3)	"	2
대통령령제351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05 (별권10)	"	35
대통령령제351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517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5179호	지방행정재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518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0

총리령

총리령제199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8	2024. 12. 19.	80
총리령제20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9	2024. 12. 20.	4
총리령제200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0	2024. 12. 23.	4
총리령제2000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901	2024. 12. 24.	96
총리령제200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904	2024. 12. 30.	19
총리령제200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총리령제200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5	2024. 12. 31.	362
총리령제200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3

부령

국토교통부령제14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5	2024. 12. 16.	4
국토교통부령제141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법무부령제108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	"	8
보건복지부령제1076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14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6	2024. 12. 17.	4
국토교통부령제141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환경부령제113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141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국토교통부령제1420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4
국토교통부령제1421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 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9
기획재정부령제10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22
환경부령제113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38
국토교통부령제142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97	2024. 12. 18.	4
국토교통부령제142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5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42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20898	2024. 12. 19.	81
법무부령제10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84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8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1
행정안전부령제53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9 (별권2)	2024. 12. 20.	89
국토교통부령제142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0	2024. 12. 23.	6
국토교통부령제1425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1427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행정안전부령제52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21
환경부령제113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22
환경부령제113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24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901	2024. 12. 24.	98
법무부령제108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9
법무부령제108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9
환경부령제1140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5
환경부령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16

고용노동부령제428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2	2024. 12. 26.	24
국토교통부령제1426호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7
국토교통부령제142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7
국토교통부령제143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9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0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5
행정안전부령제532호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28
국토교통부령제142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3	2024. 12. 27.	18
보건복지부령제1077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2
보건복지부령제1078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보건복지부령제107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1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
환경부령제11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
기획재정부령제109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4	2024. 12. 30	35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7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5
법무부령제10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6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9
외교부령제142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	"	121

통일부령제13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4	2024. 12. 30	124
행정안전부령제53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3
행정안전부령제53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2
환경부령제1146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68
고용노동부령제42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5	2024. 12. 31.	366
고용노동부령제43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5
고용노동부령제43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8
고용노동부령제4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1
교육부령제34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1
교육부령제3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3
국가보훈부령제39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15
국방부령제116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17
국방부령제1164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	"	422
국방부령제116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8
국방부령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9
국토교통부령제143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0
국토교통부령제14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5

국토교통부령제1434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5	2024. 12. 31.	456
국토교통부령제14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7
국토교통부령제143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68
환경부령제114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68
기획재정부령제109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0
기획재정부령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485
기획재정부령제10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489
기획재정부령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2
기획재정부령제10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1
기획재정부령제1100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 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18
기획재정부령제1101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	"	"	521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8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0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7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1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5
법무부령제1089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	"	538
보건복지부령제10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9
보건복지부령제1081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3
보건복지부령제108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6
보건복지부령제1083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 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	547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20905	2024. 12. 31.	548
외교부령제14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4
중소벤처기업부령제9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5
해양수산부령제7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69
해양수산부령제709호	수산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73
해양수산부령제710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 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	"	575
행정안전부령제53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77
행정안전부령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78
행정안전부령제53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86
환경부령제114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9
환경부령제11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2
환경부령제1144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4
환경부령제1145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613
환경부령제114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659
행정안전부령제53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05 (별권10)	"	77
행정안전부령제53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행정안전부령제53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8
행정안전부령제54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5
행정안전부령제54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9

인사

» 인사발령 법 제189호 | 2024. 12. 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철	2024. 12. 30.부터 2025. 1.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90호 | 2024. 12. 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승일	"
	"	송영환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수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동혁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여진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수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우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윤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호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영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홍성욱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동건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근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채대원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남성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선화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경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승원	"
	"	오명희	"
	"	오현석	"
	"	이성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박현행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혁	"
	"	조현선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영애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채성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송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장재원	"
	"	하석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
	"	장병준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주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주관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욱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류준구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김병국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
	"	유철희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슬기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	-----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	위광하	"
	"	최다운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	한소영	"

라. 사법원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성식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	-----	---

마.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우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	-----	---

바.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주일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주우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유진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	신정민 (申貞旻)	”
	”	이백규	”
	”	정윤주	”
	”	최파라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한승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
	”	심용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	최승훈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보라	”
	”	이민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민지	”
	”	함덕훈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호승	”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2024. 12. 5.부터 2024. 12. 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피교육을 명함
	"	이필복	"
	"	이호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원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지훈	"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현섭	"
	"	정현우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아영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은조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 송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도형	"
	"	김진경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신정수	"
	"	이지혜	"

끝.

》 인사발령 법 제191호 | 2024. 12. 4.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	최해일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우	"
	"	원정숙	"
	"	이규훈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용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희근	"
	"	장 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민성	"
	"	최은주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호	"
	"	이태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최영은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남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박효선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	"
	"	이재욱	"
	"	이종록	"
	"	이진관	"
	"	최재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
	"	김세현	"
	"	염원섭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신교식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차경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현경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호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	조현욱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유희선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금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유철희	"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평근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섭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	-----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
다.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동훈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수양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미혜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金旻志)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	박소정	"
	"	오형석	"
	"	이백규	"
	"	임민희	"
	"	최파라	"
	서울행정법원 판사	심용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화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석범	"
	"	정성화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웅희	2024. 12. 9.부터 2024. 12.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임대차재판실무연구 (임대차재판실무편람 연계)) 피교육을 명함
	"	홍윤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보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	이하윤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
	"	진희원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임영실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	임한아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달하	"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 검	"
	"	심현우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창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아영	"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인	"
	울산지방법원 판사	조한기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민	"
	"	오현순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경민	"
	제주지방법원 판사	황방모	"

끝.

》 인사발령 법 제192호 | 2024. 12. 5.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발령변경

인사발령 법 제184호(2024. 11. 25.)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우증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 기간 부분 “2024. 12. 8.부터 2025. 1. 4.까지”를 “2024. 12. 24.부터 2025. 1. 2.까지”로 변경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93호 | 2024. 12. 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대법원 근무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24. 1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94호 | 2024. 12. 1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4. 12. 16.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95호 | 2024. 12.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발령취소

- 가. 인사발령 법 제68호(2023. 4.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명은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나. 인사발령 법 제102호(2023.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한결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다. 인사발령 법 제176호(2023. 11.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신입판사연수 판사(사법연수원) 진선미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라. 인사발령 법 제176호(2023. 11.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신입판사연수 판사(사법연수원) 이지현 4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마. 인사발령 법 제57호(2024.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아.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래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바. 인사발령 법 제57호(2024.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다연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사. 인사발령 법 제74호(2024. 4.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아. 인사발령 법 제74호(2024. 4.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하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자. 인사발령 법 제74호(2024. 4.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 차. 인사발령 법 제120호(2024. 7.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유지운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2. 발령정정

- 가.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12호(2023. 7.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한결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 나.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12호(2023. 7.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명은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다.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62호(2023. 10. 5.자) 중 1. 임명란의 가. 지방법원 판사 김병인의 “5호봉”을 “4호봉”으로 동일자로 정정함		
	라.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87호(2023. 1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신임판사연수 판사(사법연수원) 김병인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마.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87호(2023. 1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신임판사연수 판사(사법연수원) 이지현 4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바.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0호(2024. 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신임법관연수 판사(사법연수원) 진선미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사.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93호(2024. 5.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래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아.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93호(2024. 5.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다연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자.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93호(2024. 5.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차.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93호(2024. 5.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하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카.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93호(2024. 5.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타.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135호(2024. 8.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유지운 5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96호 | 2024. 12.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은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2.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나광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31.부터 2026. 1. 30.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소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12.부터 2026. 1. 1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효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15.부터 2025. 7. 14.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회생법원 판사	강성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2.부터 2025. 12. 19.까지 휴직을 명함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유정 (金柔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1. 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염정원	2025. 1. 1.부터 2025. 4.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연희	2025. 1. 1.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2025. 1. 22.부터 2025. 10.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2025. 1. 25.부터 2025. 2. 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정일예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1. 1. 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보형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1. 18. 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현태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1. 1.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25. 자)
"	이영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19.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판사	백경현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10. 자)
	서울회생법원 판사	유지상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25.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4. 자)
	”	정제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11.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미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23. 자)
	”	조현권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27. 자)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민욱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1. 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서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15.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화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25. 1. 1. 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1. 24. 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명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에 포함 (2025. 1.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97호 | 2024. 12.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승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은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5. 1. 1.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5. 1. 2.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00호 | 2024. 12.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17호봉을 급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1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16호봉을 급함
	"	김양훈	"
	"	류경진	"
	"	소병진	"
	"	전연숙	"
	"	정성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광우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정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석준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임대호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봉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정인섭	15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윤원목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
	"	심재완	"
	"	장민석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
	"	류창성	"
	"	유재광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임영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상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창석	"
	"	이성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창현	1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재천	14호봉을 급함
	"	차진석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박현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박준섭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화	"
	"	조준호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민오	"
	"	채성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송병훈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목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철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경	12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소영	11호봉을 급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16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일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15호봉을 급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진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반병동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
"	정현식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14호봉을 급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11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성식	14호봉을 급함
마.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성열	14호봉을 급함
	"	백지예	10호봉을 급함
바.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형원	9호봉을 급함
사.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허이훈	1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11호봉을 급함
	"	노한동	"
	"	안희경	"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김진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10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지원	"
	제주지방법원 판사	최석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승철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효송	"
	대전지방법원 판사	양지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호연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나연	"
	"	이도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영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성인	"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건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구현정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이평화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동우	7호봉을 급함
	"	박 명	"
	"	박성덕	"
	"	시용재	"
	"	임휘재	"
	"	조소희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성기	"
	"	오민관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솔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윤재	"
	"	이종욱	"
	"	장동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항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기	"
	"	성창희	"
	"	정우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희영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명수	"
	청주지방법원 판사	황정환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다혜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환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준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보순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영미	5호봉을 급함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박정아	"
	"	한충엽	"
	"	정지은 (鄭知恩)	4호봉을 급함

(2025. 1. 1.자) 끝.



2025.01.15.제 1704 호
Supreme Court of Korea

